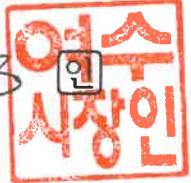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2024/03/12



여수시 조례 제2040호

붙임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 여수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 이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 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2.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3.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 기관의 협력)**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지식재산센터)를 비롯하여 지역 유관 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3조(심의방법)** 공개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공개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 조교수 이상(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남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기술거래소 등 유관기관 또는 지식재산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중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맡은 일을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참석수당 등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과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